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9

제출일자 : 2006. 9.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05. 12. 6.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행정자치부)이 개정됨에
따라 동 준칙에서 규정한 사항 등의 내용과 상이한 현행 『대구광역시
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내용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 외의 관내 유휴시설도 활용(안 제1조~제7조)
-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안 제7조)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안 제7조, 안 제11조)
- 주민자치위원의 의무 강화(안 제18조)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행정자치부)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나. 입법예고 : 2006. 8. 10 ~ 8. 30(특이사항없음)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달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의거”로 하고,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등”을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내지제3항, 제15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2호를 제5호로 하여 동조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6.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시설 등은”을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으로 하고,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정하되”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시설 등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으로 하고, “읍면 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을 “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으로,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를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내지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④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를 “하되, 이용자로부터”로, “수강료, 회비 등”을 “수강료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的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的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을 수의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⑥ 읍·면장은 “사용료”的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的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的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한 시설 등의”를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로 하고, 동조제4항 중 “그 회복을 위해 변상”을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 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중 “개시 1월전까지”를 “개시 3월전까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를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설치)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중 “장려하여야 한다”를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 중 “부위원장 및 위원”을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으로 하여 제7항으로 하고 제5항,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읍·면장은 당해 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⑤ 고문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의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위원이”를 “위원 및 고문이”로, “있다”를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내지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고, 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본다”로 한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 중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23조 중 “위원은”을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의 적용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설치예정 읍·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설치 등)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4조(설치 등)①.....</p> <p>.....</p> <p>.....</p> <p>.....</p> <p>.....</p> <p>.....</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제5조(기능)①(생략)</p> <p>1.(생략)</p> <p><u><신설></u></p>	<p>제5조(기능)①(현행과 같음)</p> <p>1.(현행과 같음)</p> <p>2. <u>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u></p>
<p>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p>	<p>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p>
<p>3~4. (생략)</p> <p>5. <u>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전의 등 주민자치기능</u></p>	<p>3~4.(현행과 같음)</p> <p>6. <u>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u></p>
<p>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p>②.....</p> <p>.....</p> <p>.....</p>
<p><u><신설></u></p>	<p>③ <u>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4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군수는 자치 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읍면
② <u>시설 등은</u>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u>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u>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② <u>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범위 등은 정하되, 읍면</u>
③ <u>시설 등을</u>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u>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읍면.....
제7조(운영)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②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 <u>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u> ② <u>읍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현 행	개 정 안
<p>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신 설></p>	<p>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p>⑦ <u>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u></p>
제10조(사용료 등)① <u>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u>	<p>제10조(사용료 등)①.....</p> <p>.....</p> <p><u>하되, 이용자로부터.....</u></p> <p><u>수강료 등.....</u></p> <p>.....</p>
② <u>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한다.</u>	<p>② <u>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u></p>
③ <u>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u>	<p>③ <u>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u></p>
<u><신설></u>	<p>④ <u>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⑤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p>
<신 설>	<p>⑥ 읍·면장은 “사용료”的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的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的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p>
<p>제11조(이용 등)①~②(생략)</p> <p>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1조(이용 등)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 대상 시설 등의</p> <p>④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p>
<신 설>	<p>⑤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보고)①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u>개시 1월전까지</u>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보고)①.....<u>개시 3월전까지</u>..... ②.....<u>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u> 군수에게</p>
<p>제15조(설치)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p>	<p>제15조(설치)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p>
<p>제16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5.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16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p> <p>1~5. (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p> <p>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⑥읍·면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②(생략)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②(현행과 같음)
<신 설>	<p>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④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p>
제20조(해촉)①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p>제20조(해촉)①읍·면장은 위원 및 고문이...</p> <p>.....</p> <p>..... 있으며,</p> <p>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p> <p>2~3.(생략)</p> <p>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u><신설></u></p> <p>②제1항에 의한 해촉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p> <p>제21조(회의)①(생략) <u><신설></u></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신설></u></p> <p><u><신설></u></p>	<p>1. 당해 읍면의</p> <p>2~3. (현행과 같음)</p> <p>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p> <p>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본다.</p> <p>제21조(회의)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p> <p>③.....</p> <p>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p> <p>⑤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회의록)위원회의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2조(회의록).....간사는.....</p>
<p>제23조(실비보상 등)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3조(실비보상등)고문을 포함한 위원은.....</p>